

대한호신협회 회원관리 및 회비 규정



대 한 호 신 협 회

대한호신협회 회원 관리 및 회비 규정

제정 2026년 1월 10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호신협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 정관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, 가입, 탈퇴, 권리와 의무 및 회비 납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회원

제2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정회원 :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승인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의결권을 가진 회원 (단, 창립 후 정회원은 2년간 회비를 내지 않는다.)
2. 준회원 : 협회의 교육·행사 등에 참여하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회원 (단, 다음 년도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승격을 심의한다.)
3. 명예회원 : 협회의 발전에 공헌이 크거나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회 의결로 추대된 회원

제3조(가입 절차)

-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준회원은 각 지부의 등록 절차에 따른다.

제4조(탈퇴 및 자격 상실)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 - 1. 사망한 경우
 - 2. 본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
- ③ 탈퇴 및 자격 상실 시 기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
제3장 권리와 의무

제5조(회원의 권리)

-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,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
- ②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교육, 세미나, 대회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본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③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6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- 1. 정관 및 제반 규정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 이행
-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성실한 납부
- 4. 본회의 명예 유지 및 협조

제4장 회비

제7조(회비의 종류)

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

- 1. 입회비 : 정회원 가입 시 1회 납부 (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)

2. 연회비 : 정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회비 (매년 1월 납부)

제8조(회비의 납부 및 관리)

- ① 회비는 본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사무총장은 회비 납부 현황을 장부에 기록·관리하고 매년 결산 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회비는 본회의 고유 목적 사업과 운영비로 충당한다.

제9조(회비 미납자에 대한 조치)

- 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의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.
- ②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납부 독촉에 불응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10조(경과조치)

-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.
- ② 창립 발기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